

대전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85호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일

대전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분	직군 (계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 인원	선발 구분			필기시험과목 (제1·2차 병합 실시)	비고
				일반	장애인	저소득층		
공개경쟁 임용시험	행정 (9급)	교육행정	48	45	2	1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선택)	
		사서	3	1	1	1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중 2과목(선택)	
경력경쟁 임용시험	기술 (9급)	공업 (일반전기)	1	1	-	-	제1차: 물리 제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특성화고· 마이스티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보건	1	1	-	-	제1차: 생물 제2차: 환경보건, 공중보건	
합계			53	48	3	2		

※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장애인 및 저소득층 선발예정 인원내 합격자가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 응시자 중에서 선발함
 ※ 교육행정과 사서의 선택과목 득점은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 적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

2. 시험방법

○ 제1·2차 시험(병합실시):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1형, 과목당 20문항/100점 만점)

구분	공개경쟁임용시험(5과목)	경력경쟁임용시험(3과목)
필기시험	100분(10:00 ~ 11:40)	60분(10:00 ~ 11:00)

○ 제3차 시험: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3.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제66조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지재산 또는 한정재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나. 거주지 제한(*다음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가능)

※ 단,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음

- ①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②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군·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등록기준지로는 응시할 수 없음

다. 응시연령

시 험 명	계 급	응시연령(생년월일)	비고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9급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원칙적으로 18세(1999.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이나,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0. 1~2월생) 해당자도 응시 가능합니다.

라. 성별: 제한 없음

마. 자격요건: 학력 및 자격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해야 함

○ 사서직렬 : 면접시험일 현재 아래와 같이 유효한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 급	직 렬	직 류	응시자격요건
공개경쟁임용	9급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 경력경쟁임용시험

- 시험 요구일 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대전광역시 소재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의 관련 학과 졸업자 및 2018년 2월 졸업 예정자로서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4년제대학, 전문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를 포함한 모든 대학의 재학·휴학자 제외)이어야 합니다.
 - (※ 2017.1.1. 현재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는 고졸자에 포함)
- <붙임1> “대전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교육행정 9급 및 사서 9급만 해당)

-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②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17.4.21.)”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공고문에 첨부한 “<붙임2> 장애인 및 임신부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 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⑤ 필기시험 합격자는 관련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본 제출 시 원본을 지참하여 대조받아야 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교육행정 9급 및 사서 9급만 해당)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17.4.21.)”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이어야 합니다.
- ②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하여 인정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 ③ 필기시험 합격자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가능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응시대상자는 일반 모집에도 비장애인 또는 비수급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나 장애인 및 저소득층 모집과 일반 모집에 **복수 접수(응시)는 불가**하며,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필기시험 문제출제

가.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일부 위탁 출제하며, 위탁되지 않는 시험 과목에 한하여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출제합니다.

▲ 위탁출제 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위탁출제 과목

계급	과목수	대상 과목
9급	9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위탁출제 과목 시험문제는 시험종료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시험문제를 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습니다.
 ▲ 공동출제 과목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출제과목을 제외한 과목
 ※ 공동출제 과목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 문제책은 회수합니다.

나.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I, 화학I, 생명과학I, 지구과학I” / “수학”은 “수학 I, 수학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에서 출제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4.17.(월) 09:00~4.21.(금)18:00 ※ 취소기간 :	제1·2차	필기시험	2017. 6. 1.(목)	2017. 6.17.(토)	2017. 7.14.(금)
4.17.(월) 09:00~4.24.(월)18:00	제3차	면접시험	2017. 7.14.(금)	2017. 8. 1.(화)	2017. 8. 8.(화)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고시·공고”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온라인채용서비스(<http://edurecruit.dj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17. 4. 17.(월) 09:00 ~ 4. 21.(금) 18:00까지

나. 원서접수 취소기간 : 2017. 4. 17.(월) 09:00 ~ 4. 24.(월) 18:00까지

다. 인터넷 원서접수

① 인터넷 주소 : 「대전광역시교육청 온라인채용서비스」

☞ (<http://edurecruit.dje.go.kr>) > 교직원 온라인채용 > 지방공무원 채용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할 예정이며, 접수자 폭주(특히 마감일) 및 인터넷 웹브라우저 오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 있게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② 응시수수료 : 5,000원 (* 수수료 결제방법 : 카드결제, 휴대폰결제 및 계좌이체)

☞ 저소득층 응시자는 응시수수료 면제(단,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절차를 거쳐 환불)

③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 사진 규격 : 가로 3.5cm × 세로 4.5cm 기준
- 사진 파일규격 : 확장자명(jpg 또는 gif), 파일사이즈(9KB이상 100KB이내)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 사진으로써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한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라. 접수상담시간 : 09:00 ~ 18:00 (토·일요일 제외)

① 인터넷 원서접수 시 시스템장애 등 문의 : 대전교육정보원(☎042-865-9304)

② 기타 임용시험 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총무과(☎042-616-8552~6)

마.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①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②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 불가능하며, 원서접수의 취소는 접수완료 후 3일 【2017. 4. 24.(월)】 까지 가능합니다.
- ③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접수완료 후 3일)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며, 취소기간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④ ‘응시표’는 ‘온라인채용서비스’에서 2017. 6. 1.(목)10:00부터 면접시험일(2017. 8. 1.)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 원서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일 후 취소기간 이후에 부여되므로, **응시표 출력기간(2017. 6. 1.이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원서접수 시 비밀번호를 분실하면 재접속이 불가능 합니다.(비밀번호는 원서접수, 필기시험 성적조회 시 등에도 사용됩니다.)

- ⑥ 응시자는 입력한 내용을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⑦ 선발직렬 및 구분별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 접수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⑧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 ⑨ 응시원서 접수사이트는 PC 운영체제 윈도우 7과 익스플로어 버전 7.0~11.0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 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

(하한성적 : 평균득점 합격선 - 3점)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 내의 다른 성(性) 합격자가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점적용 대상자 및 가산비율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산점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
의사상자 등 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1% 또는 0.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 가산점을 각각 적용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가산점 적용은 매과목 40%이상 득점시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마」 참고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① 대상 :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② 가산점 : 필기시험의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모집단위**에 한하여 가산점 적용합니다.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산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의사상자 대상(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① 대상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
- ② 가산점 : 필기시험의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합니다.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산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의 의사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044-202-3258) 등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하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① 공통적용 가산점
 -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처리분야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분야	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舊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②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군	직렬(직류)	자격증		가산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행정	교육행정	-	번호사	5%
기술	공업(일반전기)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5%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3%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보건	기능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차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3%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 가산대상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①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 적용 가산점은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②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와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되며(최대 2개 인정),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분야와 직렬별 적용 가산분야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분야에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 ③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드에 자격번호(보훈번호 등) 및 자격증 종류(가산비율)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 ④ 응시자의 부주의로 자격번호(보훈번호 등) 및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등을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입니다.
- ⑤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는 필기시험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⑥ 허위로 가산점을 등록하거나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9.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 ① 공개경쟁임용시험: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10%(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10%(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나.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평정결과는 다음의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① 우수: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② 미흡: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 ③ 보통: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다. 최종합격자

- ①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합니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합니다.
- ②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합니다.
- ③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라. 추가합격자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 까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에 공고합니다.
- 나. 시험문제책의 과목순서는 시험 공고문상의 과목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 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라.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거주지 미확인,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마. 응시자는 공고문, 응시표 등에서 안내한 유의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바.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응시자 유의방송을 청취하는 등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09:20 이후에는 시험실 입실 불가(현관 폐쇄)
- 사.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전자기기(휴대폰, 스마트워치, 무선호출기, PDA, MP3, 이어폰, 태블릿PC, 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 시작 전에 전원 차단 후 시험실 전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5년간 정지합니다.
- 자. 답안지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으로만 기재**하여야 하며 일반펜,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총무과(인사담당, ☎ 042-616-855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과 관련하여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붙임 1. 대전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1부.
- 2. 장애인 및 임신부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 1부. 끝.

[붙임1]

**대전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1. 근거

- 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제2항 제8호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제1항 제7호
- 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제16조 제3항
- 라. 「대전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2.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시험 구분	직렬(직류)·계급	선발예정인원	비고
경력경쟁임용시험	공업(일반전기) 9급	1명	
	보건(보건) 9급	1명	

3. 선발방법

가. 제1차·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직렬(직류)	필기시험과목	세부내용
공업(일반전기)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목별 100점 만점 ○ 총 60문항(과목별 20문항) ○ 객관식 4지 1택형 ○ 시험시간 : 60분
보건(보건)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4. 응시자격

- 가. 대전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나.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1999.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이나,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0.1월~2월 출생자) 해당자도 응시기회 부여

5.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임용예정직렬(직류)의 직무분야별 해당학과를 이수한 사람**

- 아래의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6]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

임용예정직렬(직류)	관련학과
공업(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보건(보건)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보건, 의학, 치의학

- 직무분야별 해당 학과는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직무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또는 학과 성적이 아래 조건을 충족한 자**

구분1	구분2	기준 학년	성적 기준
졸업자	2015년 이전 졸업	고등학교 수 학년	졸업 석차비율 상위 30% 이내인 자
	2015년 2월 졸업 2016년 2월 졸업	고등학교 수 학년	전문교과 → 하단의 성취평가제 적용 보통교과 → 하단의 내신9등급제 적용
	2017년 2월 졸업	고등학교 수 학년	전과목 → 하단의 성취평가제 적용
졸업예정자	2018년 2월 졸업예정	고등학교 1~2학년	전과목 → 하단의 성취평가제 적용

구분	기준
성취평가제	전체 과목 성취도가 B등급 이상 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등급
내신9등급제	평균 석차비율이 30% 이내 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0 이내 인 자

※ 성취평가제 / 내신9등급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성취평가제 적용 교과 중 어느 특정 과목에서 C등급이 있을 경우, 지원 불가

* 고등학교 재학 중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학한 경우 졸업예정자는 2학년, 졸업자는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함

◆ **고졸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2017.1.1. 현재 해당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도 고졸자에 포함)
※ 4년제 대학, 전문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모든 대학의 재학·휴학자는 제외
- 생활기록부상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사실이 없거나 2017.1.1. 현재 중퇴한 상태임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후 추천

- ※ 2018. 2월 졸업예정자인 합격자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함
- ※ 대학에 재학(휴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함
- ※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대학교 재학 등 학업의 계속 사유로 임용유예 불가

6. 추천서류 사전 제출

- 가. 제출기간: **2017. 3. 28.(화) 09:00 ~ 2017. 3. 31.(금) 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나. 제출방법: 학교에서 추천대상자 전원의 서류를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으로 일괄 제출 (**추천대상자 개인별 제출 불가**)
 - ※ 우편접수의 경우, 제출기간 마감일(2017. 3. 31.)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다. 제출장소: 대전광역시교육청(서구 둔산로 89) 8층 과학직업정보과 직업교육담당 (우편번호 : 35239)
 - ※ 우리 교육청 과학직업정보과에서는 추천서류를 **2017. 4. 13.(목)**까지 총무과로 제출

라. 제출서류

- ◆ 추천 현황표 및 추천서 1부 <서식1, 서식2>
- ◆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 성적증명서 1부
 - * 2015년 이전 졸업자: 소속 학과의 석차 비율 기재
 - * 2015년, 2016년 2월 졸업자: 전문교과 성취등급 및 보통교과 석차 비율(등급) 기재
 - * 2017년 이후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현재 고3): 전과목 성취등급 기재
-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해당자에 한함)
- ◆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 각서 1부 <서식3>

- 마. 추천에 필요한 관련서류의 주요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 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해 학교는 향후 3년 동안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 바. 문의처: 대전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42-616-8552~6)

7. 응시원서 접수

- 가. 대상자: **학교장 추천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터넷 접수**
- 나. 접수기간: **2017. 4. 17.(월) 09:00 ~ 2017. 4. 21.(금) 18:00**
- 다. 접수방법: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의 **6. 응시원서 접수** 참조

<서식1>

**대전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기술직군 공무원 응시대상자 추천 현황표**

- 1. 학교명: ○○ 고등학교 (직인)
(담당자: , 학교 연락처: , 핸드폰번호:)

2. 추천대상자 현황

【2015년 이전 졸업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응시직렬 (직류)	전공 (학과)	전공(학과) 석차	석차 비율	졸업일
1	○○○	1994.11.11.	여	보건 (보건)	보건의과	1/50	2%	2013.2.20.

-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30% 이내인 자

【2015, 2016년 2월 졸업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응시직렬 (직류)	전공 (학과)	전문교과			보통교과			졸업일	
						총이수 과목수 (a)	총이수과목 B등급 이상 이수여부	A 등급수 (b)	비율 (b/a)	석차	석차 비율		석차 등급
1	○○○	1997.11.11.	여	보건 (보건)	보건의과	10	O/X	7	70%	1/50	2%	1	2016.2.20.

- 전문교과: 전체 과목 성취도가 B등급 이상, 그 중 50% 이상 과목의 성취도 A등급(C 이하 있는 경우, 지원불가)
- 보통교과: 평균 석차비율이 3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0이내인 자

【2017년 이후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현재 고3)】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응시직렬 (직류)	전공 (학과)	석차	석차 비율	석차 등급	졸업 (예정)일
1	○○○	1999.11.11.	여	보건 (보건)	보건의과	1/50	2%	1	2018.2.20.

- 전체 과목 성취도가 B등급 이상, 그 중 50% 이상 과목의 성취도 A등급(C 이하 있는 경우, 지원불가)

3. 추천 현황

직 렬	직 류	학교내 지원자 수(명)	최종 추천자 수(명)
공 업	일반전기		
보 건	보 건		
계			

<서식2>

**대전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기술직군 공무원 응시대상자 추천서**

추천직렬(직류)

인적 사항	성 명	(한자:)		사 진 (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판, 응시원서의 사진과 동일한 것)
	주민등록번호	-		
학력 사항	출신학교			
	소재지			
	학과(정원)	학과(정원	명)	
	졸업 여부	년	월(졸업, 졸업예정)	
학업 성적	2015년 이전 졸업자	상위	% (등/ 명)	
	2015년, 2016년 2월 졸업자	(전문교과) 총 이수과목수: / A등급 수: / B등급 수:		
		(보통교과) 평균석차 비율(또는 석차등급):		
2017년 이후 졸업(예정)자	총 이수과목수: / A등급 수: / B등급 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전자우편(e-mail)			
<p>위 사람은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응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선발 분야의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임을 확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8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대상자로 추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7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고등학교장 (직인)</p> <p>대전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p>				
<p>※ 추가 제출 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기록부 사본 1부 성적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이전 졸업자: 소속 학과의 석차 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 2015년, 2016년 2월 졸업자: 전문교과 성취등급 및 보통교과 석차 비율(등급) 기재된 성적증명서 * 2017년 이후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현재 고3): 전과목 성취등급 기재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해당자에 한함)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각서(응시자 본인 작성) 1부 				
<p><input type="checkbox"/> 담당 교사 : 성명 연락처(핸드폰) 연락처(학교)</p>				

<서식3>

각 서

- 학 교 명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위 본인은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학교장 추천일 현재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확인내용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합격(임용) 취소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7. . .

성명 (서명)

대전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2】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인 및 임신부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

1. 편의지원 제공 대상

-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지체·뇌병변 등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및 임신부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사람

2. 편의지원 신청

- 가. 신청기간: **2017. 4. 17.(월) 09:00 ~ 2017. 4. 21.(금) 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나.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에 해당서류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 우편접수의 경우, 제출기간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응시원서는 2017. 4. 17.(월) ~ 2017. 4. 21.(금) 기간 중 인터넷으로 접수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의 **6. 응시원서 접수** 참조)
- 다. 제출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대전광역시교육청 6층 총무과 인사담당 채용업무담당자 (우편번호 : 35239)
- 라. 제출서류: **편의지원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본,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중 장애등급과 편의지원 내용에 해당하는 서류** 【참고】 참조
- 마. 문 의 처: 대전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42-616-8552~6)

3. 편의지원 제공 신청시 유의사항

- 가. 【참고】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참고】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등급 기재)
- 나. **시험시간 연장 편의지원은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에게만 제공됩니다.**
- 다. 점자문제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출제 과목에 한하여** 제공가능
- 라.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2015.4.21. 이후)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 다만,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도 인정됩니다.
 -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 마.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아래 표 녹색 표시)
 - 2)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아래 표 적색)
 -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아래 표 보라색 표시)

유형	등급(정도)	예시
시각장애	6급	상기인은 시각장애 6급이며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됩니다.
뇌병변장애	경증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4급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됩니다.
임신부	-	상기인은 임신 6주에 해당되는 자로서, 자궁의 확대로 인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 됩니다.

바. 다음의 경우 편의지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한 내용과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내용이 다를 경우
-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및 진단서)의 형식이 올바르지 못할 경우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의 내용이 형식적이거나 불명확한 경우

사. 시험진행 일정상 신청기간에 편의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원을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7년도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장애유형(등급)		필기시험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지체장애	중증 상지지체 (1급~3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대필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편의지원 신청서<서식1> 장애인증명서 사본
	경증 상지지체 (4급~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하지지체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뇌병변장애	중증 뇌병변 (1급~3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대필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편의지원 신청서<서식1> 장애인증명서 사본 의사진단서(추가)
	경증 뇌병변 (4급~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시각장애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편의지원 신청서<서식2> 장애인증명서 사본
	1급~2급	· 시험시간 1.7배 연장 (단, 3급 2호, 4급 2호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편의지원 신청서<서식2> 장애인증명서 사본 의사진단서(추가)
	3급~4급, 5급 1호	· 시험시간 1.5배 연장 (단, 6급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일 경우)	
	5급 2호, 6급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가능	
임신부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편의지원 신청서<서식3> 의사소견서	

※ 임신부의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

<서식1>

편의지원 신청서

(지체, 뇌병변장애인용)

- 응시직렬(직류) :
- 성 명 : (휴대전화 : , ☎)
- 주민등록번호 :
- 원서접수 시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여부 : (예, 아니오)

위 본인은 (지체, 뇌병변)장애 ()급으로 인한 장애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2017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을 신청합니다.

< 편의지원 신청 내용 >

장애유형	편의내용	신청여부	구비서류
지체, 뇌병변장애	확대문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증명서 사본 ◦ 의사진단서 원본 중 해당하는 서류
	확대답안지		
	대필		
	시험시간 연장		
	휠체어 전용 책상		

* 장애인증명서의 범위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 의사 진단서에는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대전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접수번호 : 응시번호 :

<서식2>

편의지원 신청서

(시각장애인용)

- 응시직렬 :
- 성 명 : (휴대전화 : , ☎)
- 주민등록번호 :
- 원서접수 시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여부 : (예, 아니오)

위 본인은 시각장애 ()급으로 문제판독 및 OMR 답안지 작성 등에 어려움이 있어, 2017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아래와 같이 편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 편의신청 내용 >

장애유형	편의내용	신청여부	구비서류
시각장애	확대문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증명서 사본 ◦ 의사진단서 원본 중 해당하는 서류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연장		

* 장애인증명서의 범위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 의사 진단서에는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대전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접수번호 : 응시번호 :

<서식3>

편의지원 신청서

(임신부용)

- 응시직렬 :
- 성 명 : (휴대전화 : , ☎)
- 주민등록번호 :

위 본인은 임신부로서 2017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아래와 같이 편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 편의신청 내용 >

구분	편의내용	신청여부	구비서류
임신부	별도 시험실 배정		◦ 의사소견서 원본
	시험 중 화장실 사용		

* 의사 소견서에는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대전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접수번호 : 응시번호 :